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8호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0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진흥위원회 기능 및 대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프로스포츠단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분할납부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라. 프로스포츠단에 체육시설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및 감경을 규정함(안 제7조).

마.「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용·수익의 조건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24, FAX 042-270-5029, E-mail : pil6969@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 프로스포츠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
2. “연고 경기장”이란 대전광역시와 프로스포츠단이 연고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스포츠산업진흥위원회)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진흥위원회를 둔다.

1.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사항
2.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기획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전광역시의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진흥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제3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가 대행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받으려는 프로스포츠단은 시장에게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프로스포츠단에게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등) 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만분의 10으로 한다.

②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려는 프로스포츠단은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경) ① 시장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2. 신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 프로스포츠단 등에서 총 건설비용 중 민간자본을 4분의 1이상 투자하여 건설한 때에 한한다.

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서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이상인 경우

4. 체육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②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서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미만인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8조(사용·수익의 조건) 영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할 것

2. 그 밖에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의 국제체육 교류에 관한 사항

②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관 계 법 령

□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프로스포츠의 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으며,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을 부과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

설 또는 개수·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과 그에 딸린 부대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프로스포츠단(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하고 투자자가 해당 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민간 투자자를 포함한다)과 우선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 건설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프로스포츠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받거나 관리를 위탁받은 프로스포츠단은 필요한 경우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수리 또는 보수가 공유재산의 원상이 변경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는 제8항에 따른 수리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를 매년 징수한다. 다만, 프로스포츠단과 협의한 경우에는 사용·수익 허가 기간 동안의 사용료 전부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

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만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일할(日割), 시간별 또는 횟수별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매년 납부기한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수리·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2.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을 모두 부과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연례적인 경기 또는 공식적인 체육 관련 행사에 해당 공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가 적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는 이용료 상한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정할 것

3. 공유재산의 시설물 중 경기장의 면적·규격, 관람석의 수 또는 공유재산의 주차장을 개조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을 것

4. 공유재산의 시설 또는 주차장에 가설 건축물 등의 시설물을 축조하지 말 것

5. 그 밖에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에서의 시설물의 축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2. 해당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3.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지상·지하에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